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 : 2016. 6. 3.

제 출 자:서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서대구산업단지재생사업계획에 상중이동청사 신축예정지가 포함되어 건립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중심의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함.
- 제2노인복지관 건립장소 변경으로 기존부지는 "청소년 문화의 집"건립 예정지로 계획됨에 따라 상중이동청사 신축부지와 교환취득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중이동주민센터 신축 계획

- 사업개요
 - 위 치 : 서구 중리동 1085-3
 - 규 모 : 부지 955m² (연면적 999m²), 지상3층
 - 사업기간 : 2015년 ~ 2017년
 - 사 업 비 : 27억원(공사비 25, 설계비 1, 감리비 등 1)
- 추진현황
 - 2013. 10월 : 시장 현장 방문 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
 - 2013. 12월 :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원 교부결정
 - 2015. 10월 : 서대구산업단지재생사업계획 승인고시(상중이동청사 신축부지 포함)
 - 2016. 5월 : 설계공모 심사 선정
- 향후일정
 - 2016. 6월~9월 : 설계용역
 - 2016. 10월 : 일사감사 및 계약심사
 - 2016. 11월 : 공사 착공
 - 2017. 7월 : 준 공

나. 공유재산(토지)교환취득 계획

- 추진배경
 - 상중이동 주민센터 신축부지(중리동 1085-3번지), 서대구산업단지재생 사업재생계획 포함
 - 제2노인복지관 건립예정지 중리동 90-13번지에서 내당동 354-7번지로 변경
 - 市 청소년 문화의 집, 중리동 90-13번지로 건립추진
 - 區 소유 중리동 90-13번지와 市 소유 중리동 1085-3번지 상호교환 취득 추진
- 교환대상

부지용도	위 치	면적	假 감정가	
상중이동 신축부지(市)	중리동 1085-3	955 m²	1,500백만원	
제2노인복지관 신축부지(區)	중리동 90-13	1587.2 m²	1,745백만원	

다. 관리계획 재산

명	칭	구분	소 재 지	면적(m²)	금액 (백만원)	비고
취득	신축	건물	중리동 1085-3	999	2,700	상중이동청사
行〒 	교환	토지	중리동 1085-3	955	1,500	市 소유
처분	교환	토지	중리동 90-13	1,587.2	1,745	區 소유 (청소년 문화의 집)

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

[상중이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취득 및 교환계획] 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	상 반 기		하 반 기			합 계			шПП	
	l L	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비고
	ᅰ	토지				1	955	1,500	1	955	1,500	
	계	건물				1	999	2,700	1	999	2,700	
		토지										
	매 입	건물										
취		기타										
	7 + 0 7	토지				1	955	1,500	1	955	1,500	
득	교환으로 취 득	건물										
_	귀 극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						
	기타취득	건물				1	999	2,700	1	999	2,700	
	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1	1,587.2	1,745	1	1,587.2	1,745	
	계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						
처	매 각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						
분	양 여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1	1,587.2	1,745	1	1,587.2	1,745	
	교 환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계										
,	사용 및	토지										
	대부허가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
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[회계명 : 일반회계] (단위 : 백만원)

	X	 ㅐ 산 표	시				취득재산	
구분			^) 면적 (m²)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지 기 시 인 소 유 자 성 명	비고
총계		토 지	955	1,500				
		건 물	999	2,700				
	소겨		955	1,500				
	공원	중리동 1085-3	955	1,500	2016	市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예정부자와 교환	대구광역시	감정가 교환
토지								
	소겨		999	2,700				
	건물	중리동 1085-3	999	2,700	2015 2017	상중이동 주민센터 신축	서구청	건물 신축
		아	래		빈	칸		
 건물								

201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 (단위: 백만원)

	재		11				(61)	
구분	지목 (용도)	소재지	시 면적 (m²)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취득재산 소 유 자 성 명	비고
총계		토지	1,587.2	1,745				
-	5/1	건물						
	소계		1,587.2	1,745				
	대지	중리동 90-13	1,587.2	1,745	2016	상중이동주민센터 산축예정부자와 교환	서구청	감정가 교환
토지								
	소계							
		해	당		없	음		
건물								

상중이동청사 건립예정 위치도

□ 위치도 (중리동 1085-3)





교환대상 재산 위치도

□ 중리동 1085-3(市) ⇔ 중리동 90-13(區)



교환 대상 부지 위치도



중리동 90-13번지(區 소유)



중리동 1085-3번지(市 소유)

관 련 법 령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]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 -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]

-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[매입, 기부체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 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] 으로 한다.
 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- 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 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한다.

[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]

- 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,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,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